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2
주주총회 소집공고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III. 경영참고사항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7
나. 회사의 현황	8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0
□ 재무제표의 승인	10
□ 이사의 선임	13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3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13
□ 정관의 변경	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8일

회 사 명 :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열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전 화) 02-3455-7300
(홈페이지) <http://www.daewonspri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박길용
(전 화) 02-3455-731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 65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2012년 3월 23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본사 회의실

* 제 6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5기(2011.1.1~2011.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동환 (출석률: 100%)	김도중 (출석률: 100%)	고창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011.01.31	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결정(1주당 75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2011.03.18	1. 대표이사 재선임(허승호, 성열각)	찬성	찬성	찬성
3차	2011.04.25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대원인디아:SC은행 시설자금 272만불 신규 대원아메리카: 외환은행 운전자금 780만불 신규)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1.08.09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대원아메리카:외환은행 운전자금 520만불 신규 대원인디아: 씨티은행 운전자금 150만불 신규)	찬성	찬성	찬성
5차	2011.10.25	1. 계열회사 임보 승인(북경대원:산업은행 운전자금 780만불 연장)	찬성	찬성	찬성
1차	2012.02.20	1.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결정(1주당 110원) 3. 계열회사 임보 승인(대원아메리카:우리은행 운전자금 1,300만불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3,100	150	50	-

* 주총승인금액은 총 등기이사 11명에 대한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삼원강재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11.1.1~2011.12.31	1,980	30.26%
대원총업(주)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11.1.1~2011.12.31	692	10.58%

* 상기 비율은 외부감사 종료 전 2011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543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국가의 핵심산업임. 자동차 제조에는 철 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2011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년도부터 계속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당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생산은 전년대비 9.0% 증가 되었음. 내수는 국내경기 회복, 소비심리 개선,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미국 및 신흥국가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증가와 국산차의 품질 신뢰도 향상, 수출 주력차종의 투입 확대, 일본 지진에 따른 일본업체의 생산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3.7% 증가 하였음. 2012년도 내수는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지만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대체수요 확대,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 증가한 1,5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확대 등의 감소 요인이 있으나, 세계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지속과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상승, 수출전략차종의 투입 등 마케팅 강화로 인해 전년대비 1.6% 증가한 3,2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2년 전체 자동차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소폭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0.9% 증가한 4,700천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년 도	2011	2010	2009	2008	2007
자동차생산(천대)	4,657	4,272	3,513	3,827	4,086
자동차수출(천대)	3,152	2,772	2,149	2,684	2,847
수 출 액(백만불)	42,852	33,594	22,975	31,907	33,841
연간생산능력(천대)	4,700	4,500	4,500	4,500	4,500

(참고 : KD 수출은 제외하였으며, 자료는 자동차통계월보를 참조하였음)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자동차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체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음.

(4) 경쟁 요소

해외 자동차 업체의 국내 자동차산업 진출과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차 부

품의 구매 방식도 모듈화 및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부품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은 해외 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인수·합병 및 도태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대형 부품업체의 탄생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해외 부품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인 당사는 스프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관련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미국의 BIG3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코일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바를 수출 중에 있으며, 제품, 소재뿐만 아니라 설비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음. 또한 당사는 현재 남미, 중국 및 유럽 등 여러 회사와 스프링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을 세계 여러나라에 제공하는 등 당사의 기술수준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스프링 제조용 소재는 특수강인 스프링강으로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원강재 및 포스코 특수강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또한 정밀 선스프링용 선재는 고려제강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일본의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동차산업 관련 법령 및 각종 정부규제로서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관련 규제, 배기가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규제와 공정거래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교통운수 관련규제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음.

특히, 현재 자동차의 구매 / 등록 / 소유 / 운행과정에는 모두 1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유사 성격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의 중요 핵심기능 부품인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판매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음.

○ 2011년 매출은 720,1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이는 자동차 수출호조 및 다양한 신차출시 효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당사의 주력제품인 스프링과 시트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손익면에서는 자동차 생산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25,46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음.

(2) 시장점유율

○ 스프링제품

스프링의 경우 주로 자동차에 소요되는 열간스프링 제조업체는 당사와 삼목강업이 있으며

,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80:20으로 최근 3년간 점유율의 변화는 없음.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에 소요되는 냉간스프링(정밀 선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를 비롯하여 국내에 수백여개가 있음. 제품별 용도, 형태, 크기, 사용재료 및 요구품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시트제품

국내의 각종 차량용(자동차 및 철도시트 포함) 시트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의 시트사업부(현대자동차 소요분 자체조달)가 국내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당사, (주)고려, 엠시트, 대원산업, 한일이화, (주)한일, JCI, DAS 등 다수의 업체가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비슷한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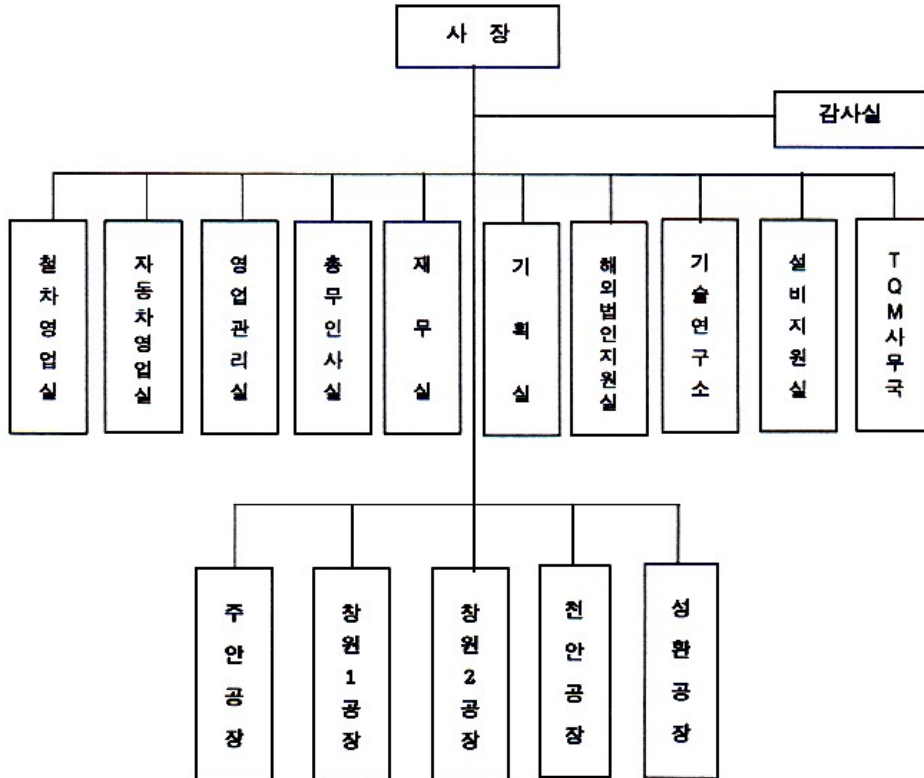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제품인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의 주요시장은 자동차회사이며, 전량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 대 수출(LOCAL 포함)의 비율은 약 55:45 정도임. 또한 동유럽 및 동남아, 중국등 자동차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에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특별한 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5 기 2011. 12. 31 현재

제 64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5기	제 64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97,780,496,292	186,659,207,666
(1) 당 좌 자 산	169,238,449,927	160,588,285,545
(2) 재 고 자 산	28,542,046,365	26,070,922,121
Ⅱ. 비 유 동 자 산	456,513,376,925	431,842,320,754
(1) 투 자 자 산	134,637,988,451	132,881,310,321
(2) 유 형 자 산	313,791,858,005	293,386,885,510
(3) 무 형 자 산	7,933,087,591	5,522,583,045
(4) 기타비유동자산	150,442,878	51,541,878
자 산 총 계	654,293,873,217	618,501,528,420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81,206,698,751	244,945,435,443
Ⅱ. 비 유 동 부 채	53,174,625,107	72,852,016,252
부 채 총 계	334,381,323,858	317,797,451,695
Ⅰ. 자 본 금	31,000,000,000	31,00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12,951,838,169	13,066,051,720
Ⅲ. 자 본 조 정	(-)2,656,607,014	(-)2,798,825,624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92,640,291	3,114,785,287
Ⅴ. 이 익 잉 여 금	274,124,677,913	256,322,065,342
당 기 순 이 익 당 기: 25,460,936,081원 전 기: 28,373,755,102 원		
자 본 총 계	319,912,549,359	300,704,076,725
부채와 자본총계	654,293,873,217	618,501,528,42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5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64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5 기	제 64 기
Ⅰ. 매 출 액	720,125,401,707	588,293,467,685

II. 매출원가	660,821,706,498	520,913,227,691
III. 매출총이익	59,303,695,209	67,380,239,994
IV. 판매비와관리비	34,318,841,012	31,941,430,074
V. 기타영업수익	15,757,218,113	14,282,127,843
VI. 기타영업비용	4,006,599,183	6,939,626,636
VII. 영업이익	36,735,473,127	42,781,311,127
VIII. 영업외수익	272,718,540	408,617,913
IX. 영업외비용	6,382,535,140	6,663,860,085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625,656,527	36,526,068,955
X i 법인세비용	5,164,720,446	8,152,313,853
X ii. 당기순이익	25,460,936,081	28,373,755,102
기본 주당 당기순이익	418	465
희석 주당 당기순이익	418	46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5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64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5 기	제 64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65,439,151,113	248,094,538,54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43,065,468,542	61,796,123,918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변경효과	-	164,694,814,454
3. 보험수리적손익	(3,087,253,510)	(6,770,154,932)
4. 당 기 순 이 익	25,460,936,081	28,373,755,102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7,384,236,000	5,029,070,000
1. 이 익 준 비 금	680,000,000	458,000,000
2. 현 금 배 당 금 (주당배당금 보통주-당기: 110원 전기: 75원	6,704,236,000	4,571,07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8,054,915,113	243,065,468,542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65기 : 1주당 현금배당 110원

64기 : 1주당 현금배당 75원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재철	1947.6.19	-	본인	이사회
박길용	1954.11.19	-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 역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	1999년 대원강업(주) 부회장 2006년 (現)대원강업(주) 회 장	해당사항 없음
박길용	대원강업(주) 전무	2006년 대원강업(주) 상 무 2011년 (現)대원강업(주) 전 무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3)	11(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1억원	38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	-----	-----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40백만원	16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본회사는 대원강업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AE WON KANG UP CO., LTD.로 표시한다.	제1조(상호) 본회사는 대원강업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AEWON KANG UP CO., LTD.로 표시한다.	-영문 상호 띄어쓰기 변경
제4조(광고방법) 본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광고방법) 본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ewonspring.com)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회사의 광고방법으로서 일간신문 외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도 인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제8조(신주인수권)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④ (생략)	제8조(신주인수권)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 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개정상법(제418조제4항)에서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발행관련 사항 중 일부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도록 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 -조문변경 -조문변경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①(생략)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u>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 한다.</u> ③(생략) ④(생략)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①(현행과 동일)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u>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③(현행과 동일) ④(현행과 동일)	-법규상 공고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p><u>제33조의2(집행임원)</u></p> <p>① <u>본회사는 이사회</u>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p> <p>② <u>집행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u>,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p> <p>③ <u>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신 설)</p>	<p><u>제33조의2(비등기 경영임원)</u></p> <p>① <u>본회사는 이사회</u>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경영임원(이하 “경영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u>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u>,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③ <u>경영임원은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로 구분하며 그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금은 정관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를 준용한다.</u></p> <p>④ <u>경영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u></p>	<p>-개정상법에 의해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으로 집행임원과 구별하기 위하여 개정함.</p> <p>- 조문분리 ③,④항으로 분리</p>
<p>(신 설)</p>	<p><u>제33조의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u></p> <p>① <u>본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인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u></p> <p>② <u>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책임감경 근거 규정을 신설함.</p>
<p><u>제34조(이사회 결의방법)</u></p> <p>① <u>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서신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u>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u>제34조(이사회 결의방법)</u></p> <p>① <u>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삭제)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시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u></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u>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의장이 행사하는 캐스팅보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함.</p> <p>- 개정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를 반영하여 단서를 신설함.</p> <p>-개정상법 제391조를 반영하여 문구를 조정함.</p>

<p>제36조(감사의 직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신설)</p>	<p>제36조(감사의 직무)</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u>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동일)</p> <p>⑥ (현행과 동일)</p> <p>⑦ <u>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u></p>	<p>개정상법 제412조의4에서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명시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3항 및 제4항 신설함.</p> <p>-전문변경</p> <p>-전문변경</p> <p>-개정상법 제412조 제3항에서 감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권을 명시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함.</p>
---	--	--

<p>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본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u>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u></p> <p>(신 설)</p>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 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본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u>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u></p> <p>② <u>본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u></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불구하고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p> <p>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 반영</p> <p>- 개정상법 반영</p> <p>- 조문변경</p> <p>- 개정상법(제449조의2)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결의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p> <p>- 개정상법 반영</p> <p>- 개정상법 반영</p> <p>- 개정상법 반영</p>
<p>제41조의1(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u>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u></p>	<p>제41조의1(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u>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u></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u>이 정관은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항, 제33조의4, 제34조, 제36조3항, 제36조4항, 제41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u></p>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